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5일, 김문수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4.11.19.)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22.) : 상정 · 제안설명 · 축조

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김문수 의원)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공표 관련, 공표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조사 완료 후 공표까지 소요된 기간을 보면, 2022년 2차 조사는 272일, 2023년 2차 조사의 경우 당초 2024년 7월 31일에 공표하기로 하였으나 연기되어 9월 26일에서야 공표가 이루어졌음(총 345일 소요)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가 신속하게 공표되어 학교와 교육당국이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음. 또한,

실태조사 결과가 예측 가능한 주기로 발표되어 학교폭력 대응 정책 수립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교육부는 실태조사 완료 후 오류 검증 및 심층 분석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단순 통계 결과만 공표할 경우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다른 실태조사에서도 통계 처리에 3~4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오류 검증, 심층 분석, 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120일 이내에 공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조사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함(안 제11조제8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8항 중 “30일”을 “120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략)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u>실시하고</u>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u>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u> <u>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u> ----- -----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 ---- <u>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u> <u>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u> ----- ----- ----.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략)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u>실시하고</u>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 ----- ----- ----- ----- <u>실시하고, 각 학교</u> <u>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u> <u>터 120일 이내에</u> ----- -----.
⑨ ~ ⑭ (생략)	⑨ ~ ⑭ (현행과 같음)